광명 퍼스트 스위첸 분양광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방문 대신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분양일정, 청약안내 및 상품관련 등의 문의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광명퍼스트스위첸.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1)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운영)
3)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4)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당 분양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 및 관람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공급계약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통보)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길 바라며 미숙지에 의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1.08.27)기준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 분양이 적용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10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8.26)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경기도 광명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는 '광명 퍼스트 스위첸' 홈페이지(http://www.광명퍼스트스위첸.com)와 (http://www.광명퍼스트스위첸청약.com)에서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 후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각각의 단지에 군별로 1건씩 청약이 가능하므로 총 3건(1군, 2군, 3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군에는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광명시청 주택과-41244 로 분양신고(2021년 08월 26일)를 득함.**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20-주택과-신축허가-31(2020.08.12.)**

▣ **분양사업자 : 파빌리온광명피에프브이㈜**

▣ **공급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44번지**

▣ **대지면적 : 3,146.0000㎡ (대지지분 : 오피스텔 2,686.9469㎡, 근린생활시설 459.0531㎡)**

▣ **연면적 : 35,890.4800㎡(오피스텔 30,777.4434㎡, 근린생활시설 5,113.0366㎡ / 지상층, 지하층 포함)**

▣ **건축물규모 : 지상 1층~2층 근린생활시설(49실), 지상 3층~13층 오피스텔(275실)**

▣ **공급대상규모 : 지상 3층~13층 오피스텔(275실)** ▣ **주차대수 : 319대**

▣ **입주예정일 : 2024년 05월 예정**

▣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되었으며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은 Ⅷ등급(MMI등급)임(응답 스펙트럼 방식으로 적용된 최대지반가속도 0.197g)

▣ **건축물 대지의 관한 사항**
가. [건축법]에 따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자다단위계획구역(9M)(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 도
지하 5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소화가스실
지하 4층	주차장, 관리인실, 펌프실
지하3층	주차장, 용역원실
지하2층	주차장, 제연휀룸
지하1층	주차장, 제연휀룸, 관리실, 방재실, 분리수거장, 무인택배함, 자전거보관소
1층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자전거보관소, 로비
2층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3층	오피스텔, 부대시설
4층~13층	오피스텔

1 분양내역 및 분양금액

▣ **분양내역**

(단위:㎡, 실)

군	타입	공급호실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대지 지분
		소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벽체, 부대시설 등)	소 계				
1군	A1	55	45.8900	20.3661	66.2561	35.5677	101.8238	8.8895
	A2	22	45.8900	20.3661	66.2561	35.5677	101.8238	8.8894
	A3	11	48.7800	21.6487	70.4287	37.8077	108.2364	9.4493
	A4	66	50.5500	22.4343	72.9843	39.1796	112.1639	9.7922
	A5	11	49.0700	21.7774	70.8474	38.0325	108.8799	9.5054
	A6	44	50.1800	22.2701	72.4501	38.8928	111.3429	9.7205
	A7	11	49.1500	21.8129	70.9629	38.0945	109.0574	9.5210
2군	B1	11	55.8100	24.7687	80.5787	43.2564	123.8351	10.8111
	B2	11	59.2200	26.2820	85.5020	45.8994	131.4014	11.4717
	B3	11	62.1200	27.5691	89.6891	48.1471	137.8362	12.0334
3군	C1	11	50.1400	22.2523	72.3923	38.8618	111.2541	9.7128
	C2	11	61.4400	27.2673	88.7073	47.6200	136.3273	11.9017

※ 전체 호실은 1인당 군별 1실씩 총 3개 군에 청약 가능하며, 향후 추첨 및 당첨자 선정시 광고문 상에 표기된 각 군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 중 무작위로 당첨자가 선정되오니 청약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 우선공급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경기도 광명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경기도 광명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우선 분양 신청시 동일 오피스텔에 1명이 2실이상을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모든 청약신청 내역이 무효처리됩니다. (ex 1군 우선분양 신청 후 2군 또는 3군 우선 분양으로 신청 불가하며, 기타지역으로 2군 또는 3군은 청약가능)
• 우선 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군별	타입	층	분양 호실	공급호실(수)	신청유형 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20%)	일반공급(80%)	
1군	A1		5	55	11	44	※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광명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A2		22	22	4	18	
	A3		11	2	1	9	
	A4		66	66	13	53	
	A5		11	2	2	9	
	A6		44	44	8	36	
	A7		11	2	2	9	
2군	B1		11	2	2	9	
	B2		11	2	2	9	
	B3		11	2	2	9	
3군	C1		11	2	2	9	
	C2		11	2	2	9	

▣ **분양금액**

(단위 : 원)

타입	층	분양호실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토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2차	10%	10%	10%	10%	10%	10%	30%
							계약시	계약후 30일내	2022.02.28	2022.07.28	2022.12.28	2023.07.07	2023.10.27	2024.01.29	입주예정일
A1	3	5	163,252,000	278,020,000	27,802,000	469,074,000	10,000,000	36,907,400	46,907,400	46,907,400	46,907,400	46,907,400	46,907,400	46,907,400	140,722,200
	4~5	10	166,653,000	283,812,000	28,381,200	478,846,200	10,000,000	37,884,620	47,884,620	47,884,620	47,884,620	47,884,620	47,884,620	47,884,620	143,653,860
	6~7	10	168,354,000	286,708,000	28,670,800	483,732,800	10,000,000	38,373,280	48,373,280	48,373,280	48,373,280	48,373,280	48,373,280	48,373,280	145,119,840
	8~11	20	170,054,000	289,604,000	28,960,400	488,618,400	10,000,000	38,861,840	48,861,840	48,861,840	48,861,840	48,861,840	48,861,840	48,861,840	146,585,520
	12~13	10	171,755,000	292,500,000	29,250,000	493,505,000	10,000,000	39,350,500	49,350,500	49,350,500	49,350,500	49,350,500	49,350,500	49,350,500	148,051,500
A2	3	2	146,365,000	249,262,000	24,926,200	420,553,200	10,000,000	32,055,320	42,055,320	42,055,320	42,055,320	42,055,320	42,055,320	42,055,320	126,165,960
	4~5	4	149,414,000	254,455,000	25,445,500	429,314,500	10,000,000	32,931,450	42,931,450	42,931,450	42,931,450	42,931,450	42,931,450	42,931,450	128,794,350
	6~7	4	150,939,000	257,052,000	25,705,200	433,696,200	10,000,000	33,369,620	43,369,620	43,369,620	43,369,620	43,369,620	43,369,620	43,369,620	130,108,860
	8~11	8	161,894,000	275,709,000	27,570,900	465,173,900	10,000,000	36,517,390	46,517,390	46,517,390	46,517,390	46,517,390	46,517,390	46,517,390	139,552,170
	12~13	4	163,513,000	278,466,000	27,846,600	469,825,600	10,000,000	36,982,560	46,982,560	46,982,560	46,982,560	46,982,560	46,982,560	46,982,560	140,947,680
A3	3	1	173,600,000	295,642,000	29,564,200	498,806,200	10,000,000	39,880,620	49,880,620	49,880,620	49,880,620	49,880,620	49,880,620	49,880,620	149,641,860
	4~5	2	177,216,000	301,802,000	30,180,200	509,198,200	10,000,000	40,919,820	50,919,820	50,919,820	50,919,820	50,919,820	50,919,820	50,919,820	152,759,460
	6~7	2	179,025,000	304,881,000	30,488,100	514,394,100	10,000,000	41,439,410	51,439,410	51,439,410	51,439,410	51,439,410	51,439,410	51,439,410	154,318,230
	8~11	4	180,833,000	307,961,000	30,796,100	519,590,100	10,000,000	41,959,010	51,959,010	51,959,010	51,959,010	51,959,010	51,959,010	51,959,010	155,877,030
	12~13	2	182,641,000	311,041,000	31,104,100	524,786,100	10,000,000	42,478,610	52,478,610	52,478,610	52,478,610	52,478,610	52,478,610	52,478,610	157,435,830
A4	3	6	158,004,000	269,082,000	26,908,200	453,994,200	10,000,000	35,399,420	45,399,420	45,399,420	45,399,420	45,399,420	45,399,420	45,399,420	136,198,260
	4~5	12	161,295,000	274,689,000	27,468,900	463,452,900	10,000,000	36,345,290	46,345,290	46,345,290	46,345,290	46,345,290	46,345,290	46,345,290	139,035,870
	6~7	12	162,941,000	277,491,000	27,749,100	468,181,100	10,000,000	36,818,110	46,818,110	46,818,110	46,818,110	46,818,110	46,818,110	46,818,110	140,454,330
	8~11	24	174,768,000	297,632,000	29,763,200	502,163,200	10,000,000	40,216,320	50,216,320	50,216,320	50,216,320	50,216,320	50,216,320	50,216,320	150,648,960
	12~13	12	176,516,000	300,608,000	30,060,800	507,184,800	10,000,000	40,718,480	50,718,480	50,718,480	50,718,480	50,718,480	50,718,480	50,718,480	152,155,440
A5	3	1	153,252,000	260,991,000	26,099,100	440,342,100	10,000,000	34,034,210	44,034,210	44,034,210	44,034,210	44,034,210	44,034,210	44,034,210	132,102,630
	4~5	2	156,445,000	266,428,000	26,642,800	449,515,800	10,000,000	34,951,580	44,951,580	44,951,580	44,951,580	44,951,580	44,951,580	44,951,580	134,854,740
	6~7	2	158,041,000	269,147,000	26,914,700	454,102,700	10,000,000	35,410,270	45,410,270	45,410,270	45,410,270	45,410,270	45,410,270	45,410,270	136,230,810
	8~11	4	169,512,000	288,682,000	28,868,200	487,062,200	10,000,000	38,706,220	48,706,220	48,706,220	48,706,220	48,706,220	48,706,220	48,706,220	146,118,660
	12~13	2	171,207,000	291,569,000	29,156,900	491,932,900	10,000,000	39,193,290	49,193,290	49,193,290	49,193,290	49,193,290	49,193,290	49,193,290	147,579,870
A6	3	4	160,032,000	272,537,000	27,253,700	459,822,700	10,000,000	35,982,270	45,982,270	45,982,270	45,982,270	45,982,270	45,982,270	45,982,270	137,946,810
	4~5	8	163,366,000	278,215,000	27,821,500	469,402,500	10,000,000	36,940,250	46,940,250	46,940,250	46,940,250	46,940,250	46,940,250	46,940,250	140,820,750
	6	4	165,033,000	281,054,000	28,105,400	474,192,400	10,000,000	37,419,240	47,419,240	47,419,240	47,419,240	47,419,240	47,419,240	47,419,240	142,257,720
	7	4	175,241,000	298,439,000	29,843,900	503,523,900	10,000,000	40,352,390	50,352,390	50,352,390	50,352,390	50,352,390	50,352,390	50,352,390	151,057,170
	8~11	16	177,011,000	301,453,000	30,145,300	508,609,300	10,000,000	40,860,930	50,860,930	50,860,930	50,860,930	50,860,930	50,860,930	50,860,930	152,582,790
	12~13	8	178,782,000	304,467,000	30,446,700	513,695,700	10,000,000	41,369,570	51,369,570	51,369,570	51,369,570	51,369,570	51,369,570	51,369,570	154,108,710
A7	3	1	153,628,000	261,630,000	26,163,000	441,421,000	10,000,000	34,142,100	44,142,100	44,142,100	44,142,100	44,142,100	44,142,100	44,142,100	132,426,300
	4~5	2	156,828,000	267,081,000	26,708,100	450,617,100	10,000,000	35,061,710	45,061,710	45,061,710	45,061,710	45,061,710	45,061,710	45,061,710	135,185,130
	6~7	2	158,428,000	269,806,000	26,980,600	455,214,600	10,000,000	35,521,460	45,521,460	45,521,460	45,521,460	45,521,460	45,521,460	45,521,460	136,564,380
	8~11	4	169,927,000	289,389,000	28,938,900	488,254,900	10,000,000	38,825,490	48,825,490	48,825,490	48,825,490	48,825,490	48,825,490	48,825,490	146,476,470
	12~13	2	171,627,000	292,283,000	29,228,300	493,138,300	10,000,000	39,313,830	49,313,830	49,313,830	49,313,830	49,313,830	49,313,830	49,313,830	147,941,490
B1	3	1	181,565,000	309,208,000	30,920,800	521,693,800	10,000,000	42,169,380	52,169,380	52,169,380	52,169,380	52,169,380	52,169,380	52,169,380	156,508,140
	4~5	2	185,348,000	315,649,000	31,564,900	532,561,900	10,000,000	43,256,190	53,256,190	53,256,190	53,256,190	53,256,190	53,256,190	53,256,190	159,768,570
	6~7	2	187,239,000	318,870,000	31,887,000	537,996,000	10,000,000	43,799,600	53,799,600	53,799,600	53,799,600	53,799,600	53,799,600	53,799,600	161,398,800
	8~11	4	200,829,000	342,015,000	34,201,500	577,045,500	10,000,000	47,704,550	57,704,550	57,704,550	57,704,550	57,704,550	57,704,550	57,704,550	173,113,650
	12~13	2	202,837,000	345,435,000	34,543,500	582,815,500	10,000,000	48,281,550	58,281,550	58,281,550	58,281,550	58,281,550	58,281,550	58,281,550	174,844,650
B2	3	1	202,489,000	344,842,000	34,484,200	581,815,200	10,000,000	48,181,520	58,181,520	58,181,520	58,181,520	58,181,520	58,181,520	58,181,520	174,544,560
	4~5	2	206,707,000	352,026,000	35,202,600	593,935,600	10,000,000	49,393,560	59,393,560	59,393,560	59,393,560	59,393,560	59,393,560	59,393,560	178,180,680
	6~7	2	208,817,000	355,618,000	35,561,800	599,996,800	10,000,000	49,999,680	59,999,680	59,999,680	59,999,680	59,999,680	59,999,680	59,999,680	179,999,040
	8~11	4	210,926,000	359,210,000	35,921,000	606,057,000	10,000,000	50,605,700	60,605,700	60,605,700	60,605,700	60,605,700	60,605,700	60,605,700	181,817,100
	12~13	2	213,035,000	362,802,000	36,280,200	612,117,200	10,000,000	51,211,720	61,211,720	61,211,720	61,211,720	61,211,720	61,211,720	61,211,720	183,635,160
B3	3	1	202,073,000	344,133,000	34,413,300	580,619,300	10,000,000	48,061,930	58,061,930	58,061,930	58,061,930	58,061,930	58,061,930	58,061,930	174,185,790
	4~5	2	206,283,000	351,302,000	35,130,200	592,715,200	10,000,000	49,271,520	59,271,520	59,271,520	59,271,520	59,271,520	59,271,520	59,271,520	177,814,560
	6	1	208,388,000	354,887,000	35,488,700	598,763,700	10,000,000	49,876,370	59,876,370	59,876,370	59,876,370	59,876,370	59,876,370	59,876,370	179,629,110
	7	1	221,278,000	376,839,000	37,683,900	635,800,900	10,000,000	53,580,090	63,580,090	63,580,090	63,580,090	63,580,090	63,580,090	63,580,090	190,740,270
	8~11	4	223,513,000	380,645,000	38,064,500	642,222,500	10,000,000	54,222,250	64,222,250	64,222,250	64,222,250	64,222,250	64,222,250	64,222,250	192,666,750
	12~13	2	225,748,000	384,452,000	38,445,200	648,645,200	10,000,000	54,864,520	64,864,520	64,864,520	64,864,520	64,864,520	64,864,520	64,864,520	194,593,560
C1	3	1	168,062,000	286,211,000	28,621,100	482,894,100	10,000,000	38,289,410	48,289,410	48,289,410	48,289,410	48,289,410	48,289,410	48,289,410	144,868,230
	4	1	171,563,000	292,174,000	29,217,400	492,954,400	10,000,000	39,295,440	49,295,440	49,295,440	49,295,440	49,295,440	49,295,440	49,295,440	147,886,320
	5	1	182,175,000	310,247,000	31,024,700	523,446,700	10,000,000	42,344,670	52,344,670	52,344,670	52,344,670	52,344,670	52,344,670	52,344,670	157,034,010
	6~7	2	184,034,000	313,412,000	31,341,200	528,787,200	10,000,000	42,878,720	52,878,720	52,878,720	52,878,720	52,878,720	52,878,720	52,878,720	158,636,160
	8~11	4	185,893,000	316,578,000	31,657,800	534,128,800	10,000,000	43,412,880	53,412,880	53,412,880	53,412,880	53,412,880	53,412,880	53,412,880	160,238,640
	12~13	2	187,752,000	319,744,000	31,974,400	539,470,400	10,000,000	43,947,040	53,947,040	53,947,040	53,947,040	53,947,040	53,947,040	53,947,040	161,841,120
C2	3	1	193,804,000	330,052,000	33,005,200	556,861,200	10,000,000	45,686,120	55,686,120	55,686,120	55,686,120	55,686,120	55,686,120	55,686,120	167,058,360
	4~5	2	197,842,000	336,928,000	33,692,800	568,462,800	10,000,000	46,846,280	56,846,280	56,846,280	56,846,280	56,846,280	56,846,280	56,846,280	170,538,840
	6~7	2	199,861,000	340,366,000	34,036,600	574,263,600	10,000,000	47,426,360	57,426,360	57,426,360	57,426,360	57,426,360	57,426,360	57,426,360	172,279,080
	8~11	4	214,367,000	365,070,000	36,507,000	615,944,000	10,000,000	51,594,400	61,594,400	61,594,400	61,594,400	61,594,400	61,594,400	61,594,400	184,783,200
	12~13	2	216,511,000	368,721,000	36,872,100	622,104,100	10,000,000	52,210,410	62,210,410	62,210,410	62,210,410	62,210,410	62,210,410	62,210,410	186,631,230

※ 상기 총 분양금액은 각 오피스텔 타입, 층, 향, 구조, 외부창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실, MDF, 방재실, 복도, 계단, 로비, 벽체 공유면적, 부대시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타입별로 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체(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MDF, 방재실, 계단 등)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전체 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해당 용도별 전용(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 타입별 대지지분은 용도 군별, 오피스텔 타입별 공급면적 비율로 균등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 타입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 · 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분양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 대상 75실은 12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세부사항은 시이버 모델하우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타입별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한 잔금에 대하여는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입별로 청약 신청은 불가하며, 군별 청약 신청만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시 타입이 지정됩니다)
- 상기 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청약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의 20%를 경기도 광명시 거주자에 한해 우선 선정합니다.(광명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단, 경기도 광명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경기도 광명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분양 신청시 동일 오피스텔에 1명이 2실이상을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모든 청약신청 내역이 무효처리됩니다. (ex 1군 우선분양 신청 후 2군 또는 3군 우선 분양으로 신청 불가하며, 기타지역으로 2군 또는 3군은 청약가능)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광고일(2021.08.27.)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역 및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일정 및 방법**

구 분	청약일정	방법 및 장소
청약접수	2021.09.02.(목)~2021.09.03.(금) 09:00~17:00	- PC : 광명 퍼스트 스위첸 홈페이지 접속 후 연결된 청약 사이트 (http://www.광명퍼스트스위첸청약.com)인터넷청약 접수 - 스마트폰 : 광명 퍼스트 스위첸 홈페이지 접속 후 연결된 청약 사이트 (http://www.광명퍼스트스위첸청약.com)인터넷청약 접수 *광명 퍼스트 스위첸 홈페이지 (http://www.광명퍼스트스위첸.com)

- 본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은 "군별"에 따라 접수하며,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및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제2항에 의거 수의분양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PC 및 모바일 청약신청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 신청금	내용
모든 군 공통	없음	- 광명 퍼스트 스위첸 오피스텔 전 타입(군)의 청약 신청금은 없으며, 동일 군에는 중복 청약이 불가 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 및 중복청약 관련 안내(1인 3건 청약가능)
- 각각의 단지에 군별로 1건씩 청약이 가능하므로 총 3건(1군, 2군, 3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군에는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 광명 퍼스트 스위첸 군 안내
- 1군(A1, A2, A3, A4, A5, A6, A7), 2군(B1, B2, B3), 3군(C1, C2)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도 군별로 청약 신청 가능하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거주자 우선 분양은 1명당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 1실만 분양 가능하므로 추첨 순서에 따라 거주자 우선 분양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되지 않은 청약신청 군은 기타지역 거주자와 동시 추첨을 진행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청약